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9 - 14호

상반기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 공고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2019. 3. 20.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1. 선발분야

가. 성적우수 장학생

- 선발인원 :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35명(관내 학교 25명, 관외 학교 1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선발 가능하며, 관내 대학은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 지급액 : 고등학생 700,000원, 대학생 최대 2,000,000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나. 모범 장학생

- 선발인원 :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30명 * 선발인원 50% 학교 배정
- 지급액 : 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700,000원, 대학생 최대 2,000,000원
- 선발방법 : 읍·면·동 또는 진흥원으로 직접 신청

다.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10,000,000원 예산 범위 내(초·중·고)
- 지급액 : 1위 700,000원, 2위 500,000원, 3위 300,000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라. 희망 장학생

- 선발인원 : 5명(중·고·대)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액 : 2,000,000원
- 선발방법 : 장학생 상황(가정형편)이 긴급한 경우 이사회 심의없이 이사장이 선발

마.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 선발인원 : 5명(대학생 및 일반 시민)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액 : 2,000,000원
- 선발방법 : 사회일반 및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세종의 발전에 기여한 자 선발

바.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 선발인원 : 10,000,000원 예산 범위 내(중·고·대)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액 :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1,200,000원, 대학생 2,000,000원
- 선발방법 : 공익발전기여자 소속 해당 기관장(ex. 조치원소방서장) 혹은 신청인 소속 학교장 추천

2.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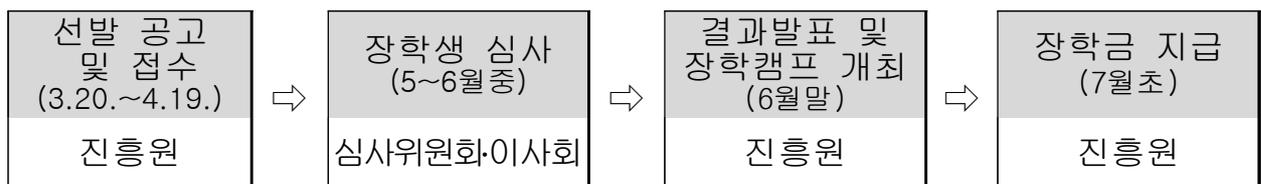
가. 신청기간 : 2019. 4. 19.(금) 소인분까지

※ 4.19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소인분이라 함은 4.19일자 발송분까지 접수 가능함)

나. 제출서류(p20~21 참조)

다. 선발결과 발표 :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http://www.sjhle.or.kr>) 및 세종 시청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공지사항” 게시

3. 선발일정



4.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정지
- 타 기관(학교)과 장학금 중복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
- 문의처 :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044-865-9686, 044-865-9670

2019년 상반기(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계획

I 분야별 선발계획

1 성적우수 장학생

가. 고등학생

○ 선발인원 : 고등학생 100명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총인원	세종고	세종여고	한솔고	세종하이텍고	세종국제고	도담고	아름고	고운고	두루고	세종예고	중학습생교	종촌고	양지고	보람고	새롬고	소담고	세종예고	다정고	성남고
100	8	7	7	4	3	6	8	5	6	3	8	7	6	9	4	2	2	2	5

○ 지급액 : 고등학생 700천원

○ 선발기준 :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5% 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 학교에서 일괄 제출

○ 추천권자 : 학교장

○ 선발 제외 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연도별 구분)

나. 대학생

○ 선발인원 : 관내 학교 25명, 관외 학교 10명(예산 범위 내 선발 가능)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대전카톨릭대	한국영상대
관내대학교	25	10	9	1	5

○ 지급액 : 최대* 2,000천원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추천권자 : 총 · 학장

○ 선발 제외 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연도별 구분)

-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

○ **선발기준**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 아래의 성적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의 경우 ① 소득기준 > ② 다자녀 > ③ 우리 시 봉사실적*으로 우선 선발(성적 및 소득평가 방법은 p11부터 참조)
- * 우리 시 봉사실적 인정여부 등 그 외 기타사항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함

구 분	신 청 요 건
신 입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평균 80점 이상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의 과목은 평가에서 제외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지원자가 신청요건 선택
재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성적 3.5(4.5점 만점) 이상 - 3.0점(4.0점 만점), 3.3점(4.3점 만점) 이상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이전에 다녔던 대학의 직전학기 성적 기준이며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기준

② **모범 장학생**

○ **선발인원** :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30명 * 선발인원의 50%는 학교배정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인원	조치원중	조치원영중	연동중	연서중	금호중	전의중	장기중	부강중	한솔중	도담중	새롬중	아름중	어진중	고운중	두루중	종촌중	양지중	소담중	새움중	새뜸중	보람중	글벗중	다정중	반곡중
중학생	20	1	1	1	-	1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구분	총인원	세종고	세종영고	한솔고	세종하이텍	세종국제고	도담고	아름고	고운고	두루고	세과영양고	중화실업고	종촌고	양지고	보람고	새롬고	소담고	세종예고	다정고	성남고
고등학생	22	2	1	1	1	1	1	2	1	1	1	2	1	1	2	1	1	1	1	1

구 분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대전카톨릭대	한국영상대
대학생	15	6	5	1	3

○ **지 급 액** : 중학생 300천원, 고등학생 700천원, 대학생 최대* 2,000천원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① 중·고등학생

- (관내 거주자)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거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
- (관외 거주자)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인 경우
 - * 중위소득 이하 관외 거주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신청 불가

② 대학생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5분위 이하)

* 2019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가구: 8,027,552원)

○ 선발 제외 대상

-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
- 타 장학금 전액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대학생만 해당)
- 휴학생, 휴학 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포스텍 등]

○ 접수방법 : 읍·면·동 또는 재단에 직접 신청

○ 심사방법 : 건강보험료 배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가사상황조사서 참고)
- (1순위) 총 과세표준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2순위) 주거환경(기타→월세→전세→자가) 순으로 선발
 - (3순위) 월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3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10,000,000원 예산범위 내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액 : 1위 700천원, 2위 500천원, 3위 300천원
- 선발기준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혹은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 두고 1년 이상 거주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등 분야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 순서 기준, 3위 이상* 수상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시상내역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일 경우 대상이 1위

○ 추천 제외 대상

- 비공인 단체가 주최한 대회 입상자
- 국민의식 함양 및 계몽성 대회 입상자
- 시·군·구 단위 기관 및 관련 단체지부 등에서 주최한 대회 입상자
- 회사 홍보를 위한 대회 입상자
- 각종 사례 발표대회 입상자
- 대학(원)의 총(학)장이 주최한 각종대회 입상자
- 체육회, 교육청 등에서 격려금이나 후원금을 각 지급액 초과하여 받은 자
ex) 전국 바둑대회 1위 수상자로 대회 시상금 700천원 및 교육청 장학금 300천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700천원 중 교육청 장학금300천원을 제외하고 400천원을 지급

※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은 1인 1회만 지급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추천권자 : 학교장

4 희망 장학생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5명(수시) / 1인당 2,000천원 ※ 예산 소진시 까지

○ 선발기준

- 본인 또는 부모, 기타 보호자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유발생일 기준)
- 관내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장학생 상황(가정형편)이 긴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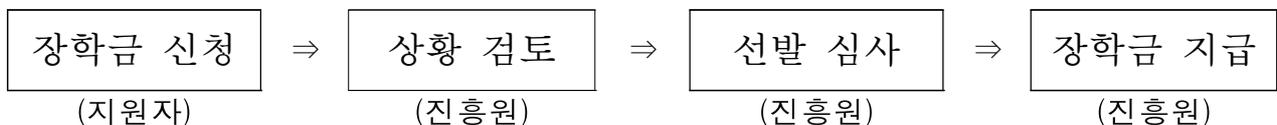
※ 천재지변, 상해, 가정형편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심의 없이 이사장이 선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발절차



5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5명 / 1인당 2,000천원 ※ 예산 소진시 까지

○ 선발대상 : 일반시민 및 대학생

○ 선발기준

- 주소지 제한 없음
- 사회일반 및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 선발제외 : 초·중·고등 학생

○ 지원서류 : 자기소개서, 장학금사용 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 지원내역 : 자기개발지원금(훈련비, 활동비 등)

※ 장학금의 개념을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확대하여 인재육성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

6]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 선발인원 및 선발대상 : 10백만원 범위 내 / 중·고·대학생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금액 :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1,200천원, 대학생 2,000천원

○ 선발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의
자녀로 본인(국가유공자) 또는 자녀(신청인)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높을수록 우선 선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사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본인(의사상자) 또는 자녀(신청인)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그 외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자녀

※ 예산 소진시까지 선발하며 그 외 사항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함

○ 추천권자 : 해당 기관·학교장(공무원) 추천 혹은 가족(의사자)이 신청

○ 선발제외

-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중 그 처분사유 등이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참고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II 평가방법

1. 성적 평가

① 고등학생

- 선발기준 :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5% 이내로 성적증명서 및 석차 확인 양식(송부 서식) 학교에서 일괄 공문 제출

② 대학생

가. 재학생

- 대학별 학점 만점 기준이 상이(4.0, 4.3, 4.5)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만점 성적 환산표'로 평가하여 환산점수 89점 이상인 자
 - (관내 학교) 학교별 재량에 의하여 선발하여 배정 인원 내 진흥원 제출
 - (관외 학교) 아래 성적을 1순위로 하되 동점자의 경우 ① 소득기준 > ② 다자녀 > ③ 우리 시 봉사실적*으로 우선 선발
- 만점 성적 환산표(서울대학교 백분위환산점수표 활용)

환산점수	4.5 만점	4.3 만점	4.0 만점
100	4.50	4.30	4.00
98	4.49~4.40	4.29~4.20	3.99~3.90
97	4.39~4.30	4.19~4.10	3.89~3.80
96	4.29~4.20	4.09~4.00	3.79~3.70
95	4.19~4.10	3.99~3.90	3.69~3.60
94	4.09~4.00	3.89~3.80	3.59~3.50
93	3.99~3.90	3.79~3.70	3.49~3.40
92	3.89~3.80	3.69~3.60	3.39~3.30
91	3.79~3.70	3.59~3.50	3.29~3.20
90	3.69~3.60	3.49~3.40	3.19~3.10
89	3.59~3.50	3.39~3.30	3.09~3.00

나. 신입생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상대평가) : 백분위로 평가
- 한국사영역, 영어영역(절대평가) : 등급별 감점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 어	0	0.5	1.0	1.5	2.0	2.5	3.0	3.5	4.0
한국사	0	0	0	0.4	0.8	1.2	1.6	2	2.4

○ 수능 성적 산출

-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환산 점수 = (① + ②) ÷ ③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

○ 성적 산출 예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일본어 I
표준점수		131	137		53	64	69
백 분 위		93	95		75	93	95
등 급	4	2	2	3	4	2	2

-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93 + 95 + [(75 + 93) \div 2] = 272.0$

-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1.0(\text{영어영역}) + 0.4(\text{한국사영역}) = 1.4$

-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3

☞ 환산 점수 = $(272 - 1.4) \div 3 = 90.20$

②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예체능 과목 및 이수과목은 평가에서 제외

○ 성적산출 예시

교과	과목	1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국어	2	91 / 77.3(16.0)	A(27)	3
수학	수학	2	97 / 77.2(18.0)	A(27)	2
영어	실용영어	2	92 / 67.5(19.9)	A(27)	2
사회	한국사	3	84 / 70.9(18.7)	B(27)	4
체육	체육	2	96 / 90.7(-7.5)	A(27)	
예술(음악/미술)	음악	2	92 / 86.4(-7.7)	A(27)	
제2외국어	일본어	3	95 / 78.3(15.4)	A(27)	2
공업에 관한교과	공업일반	2	87 / 74.4(15.8)	B(27)	
공업에 관한교과	기계일반	2	87 / 68.4(19.8)	B(27)	

①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1,445

$$\rightarrow 2 \times 91 + 2 \times 97 + 2 \times 92 + 3 \times 84 + 3 \times 95 + 2 \times 87 + 2 \times 87 = 1,445$$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rightarrow 2 + 2 + 2 + 3 + 3 + 2 + 2 = 16$$

$$\Rightarrow \text{환산 점수} : 1,445 \div 16 = 90.3$$

③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법

○ 검정고시 평균점수로 평가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의 합 ÷ 과목 수

2. 소득 및 재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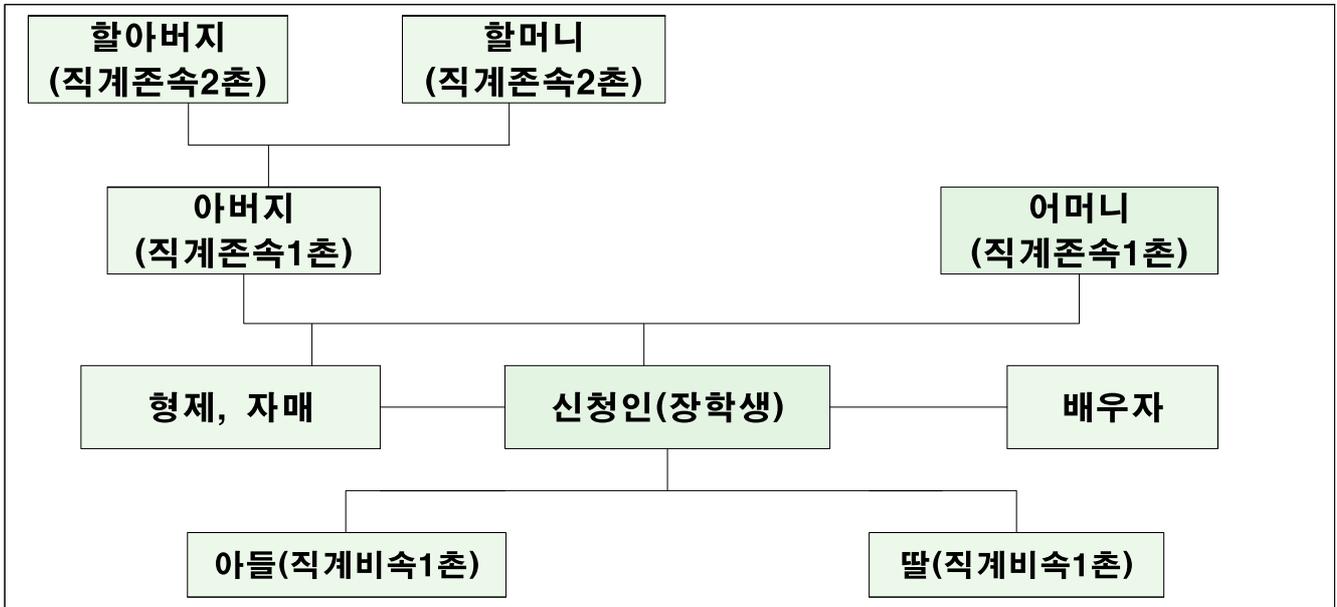
① 공통사항

- (원칙) 아래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 1577-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
- (재산) 가사상황조사서(별지서식 4호)를 신청인 거주 세종시 관내 주민센터 방문하여, 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산상황(동산 및 부동산)을 확인 후 제출
 - 관외 거주자인 중, 고등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서류로 가사상황조사서를 대체하여 제출 가능함
 - 관외 거주자인 중, 고등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 불가
 - * 대학생은 부모 또는 본인이 공고일 기준 반드시 1년 이상 세종시 거주 필수 요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더라도 관외거주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他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지원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 가사상황조사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소득분위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소득 조사

가. 가구원 수 산정

- (원칙)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원
 - 지원 대상 학생 본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자매 제외



○ (예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

○ (기타사항)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참고 자료

예시 1

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예시 2

장학금을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예시 3

장학금을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 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나. 보험료 산출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0.5)

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

[배점기준 표 : (출처) 보건복지부(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중위소득	배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61,361	79,109	96,909	116,039	133,633	150,844	169,191	189,330	206,091
70%	90		66,173	85,379	105,411	124,490	144,749	163,883	183,286	202,387	222,133
80%	85		75,606	97,689	120,060	142,729	163,883	186,282	209,942	231,041	255,816
90%	80		85,379	110,015	135,303	159,761	186,282	209,942	236,255	263,711	283,533
100%	75		94,808	121,528	150,844	177,419	206,091	236,255	263,711	295,580	326,151
110%	70		103,268	133,633	166,543	195,425	226,441	255,816	295,580	326,151	348,036
120%	65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248,424	283,533	326,151	348,036	378,988
130%	60	72,254	122,961	159,761	195,425	231,041	272,807	310,158	348,036	378,988	410,509
140%	55	77,343	13,905	171,897	209,942	248,424	295,580	326,151	378,988	410,509	442,043
150%	50	82,923	142,729	183,286	226,441	272,807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160%	45	88,559	150,844	195,425	241,925	283,533	348,036	378,988	442,043	487,738	563,593
170%	40	93,838	159,761	209,942	255,816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563,593
180%	35	99,935	169,191	222,133	272,807	326,151	378,988	442,043	487,738	563,593	719,019

중위소득	배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18,369	46,563	79,933	107,610	131,220	151,910	174,163	198,797	219,834
70%	90		25,519	59,833	94,807	119,198	144,355	168,085	191,312	215,233	239,780
80%	85		40,677	82,348	113,534	142,335	168,085	195,048	224,509	251,313	279,085
90%	80		59,833	99,350	133,509	162,358	195,048	224,509	257,406	287,857	308,578
100%	75		75,719	115,254	151,910	184,185	219,834	257,406	287,857	321,364	355,813
110%	70		90,722	131,220	170,991	206,898	245,305	279,085	321,364	355,813	380,294
120%	65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271,339	308,578	355,813	380,294	413,866
130%	60	33,784	116,782	162,358	206,898	251,313	297,628	336,809	380,294	413,866	449,143
140%	55	42,355	129,221	177,370	224,509	271,339	321,364	355,813	413,866	449,143	483,381
150%	50	54,701	142,335	191,312	245,305	297,628	336,809	380,294	449,143	483,381	531,741
160%	45	65,115	151,910	206,898	264,138	308,578	380,294	413,866	483,381	531,741	605,597
170%	40	74,244	162,358	224,509	279,085	336,809	380,294	449,143	483,381	531,741	605,597
180%	35	86,261	174,163	239,780	297,628	355,813	413,866	483,381	531,741	605,597	745,001

중위소득	배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61,376	80,030	97,689	117,373	135,303	152,850	171,897	192,469	209,942
70%	90		66,876	86,273	106,572	125,994	146,494	166,543	186,282	206,091	226,441
80%	85		76,457	98,862	121,528	144,749	166,543	189,330	213,859	236,255	263,711
90%	80		86,273	111,256	137,059	161,683	189,330	213,859	241,925	272,807	295,580
100%	75		95,962	122,961	152,850	180,259	209,942	241,925	272,807	310,158	348,036
110%	70		104,200	135,303	169,191	198,870	231,041	263,711	310,158	348,036	378,988
120%	65	66,876	114,691	148,626	183,286	217,845	255,816	295,580	348,036	378,988	410,509
130%	60	72,951	124,490	161,683	198,870	236,255	283,533	326,151	378,988	410,509	442,043
140%	55	77,550	133,633	174,636	213,859	255,816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150%	50	83,802	144,749	186,282	231,041	283,533	326,151	378,988	442,043	487,738	563,593
160%	45	89,539	152,850	198,870	248,424	295,580	378,988	410,509	487,738	563,593	719,019
170%	40	94,808	161,683	213,859	263,711	326,151	378,988	442,043	487,738	563,593	719,019
180%	35	101,018	171,897	226,441	283,533	348,036	410,509	487,738	563,593	719,019	1,439,062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

3 재산 조사

- 신청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참고 2> 서식의 **파란색 부분**
 (① 재산상황, ② 신청자 거주 소재 읍·면·동장 의견, ③ 읍·면·동장 직인) 작성
 - 관내(세종시) 주민센터의 “재무담당 공무원”의 “재산상황”조회 협조 요청

구분	자격명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 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인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 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 계층확인서

참고 2 재산 조사 관련 가사상황조사서 양식

※ 반드시 본 양식과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소지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주 소		년 월 일				휴대폰 :	
	세종시전입일							
	학 교 명				학년(학과)			
가 족 사 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건강정도	직 업	월수입	비 고	
주거환경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세 : 천원, 월세 : 천원)				
생활주원	ex) 부, 모	월 소득금액	천원 (1인당 월평균 소득금액 : 천원)					
① 재 산 상 황	동산	천원		부 동 산	전	m ²	답	m ²
	자동차	차명			대지	m ²	임야	m ²
		년식		건축물(주택등) :				
	관련대장 확인 : 재무담당자				총 과세표준액 :		천원	
② < 신청자 거주 소재 읍·면·동장 의견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③		추천자(읍면동장) :				읍·면·동장(기관장) (직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3. 특기적성 장학생 배점표

규모	주최자 및 대회 기준	배 점			비고
		1위	2위	3위	
국제	• 아시아 및 세계 대회 등	15	14	13	
전국	• 세계대회 선발전	10	9	8	
	• 전국 단위 협회·연맹 주최 전국대회 •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등 • 정부, 공공기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	8	7	6	
	• 시도 단위협회·연맹 주최 전국대회 •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6	5	4	
	• 시도지사, 교육감 주최 전국 대회 • 전국대회 선발전, 시도 단위 연맹 주최 전국 대회 등 • 그 밖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4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단체종목 경우 배점표 기준 대회 수상 점수에서 2점 감하여 평가하며 팀에서 1인만 지원 가능

III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성 적 우 수	고 등 학 생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⑨
	관 내 대 학 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⑪, ⑫
	관 외 대 학 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⑪, ⑫, ⑬
모 범	중 · 고 등 학 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⑬, ⑭, ⑮
	대 학 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⑪, ⑫, ⑬, ⑭, ⑮ 혹은 ⑯
특 기 적 성	초·중·고등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⑰, ⑱
희 망	중·고·대학생	모범 분야와 동일하게 준비하되 기타 추가 증빙 서류 제출 (ex. 신문기사, 판결문, 읍면동 긴급복지지원확인서 등)
지역혁신인재	대학생·일반시민	㉠
공익발전기여	중·고·대학생	①, ②, ④, ⑤, ⑥, ⑰, ⑱

- ① [별지 제1호] 장학금지원신청서
- ②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③ [별지 제6호] 타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학교 발급, 대학생은 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
- ④ [별지 제7호] 서약서
- ⑤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이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도 별도 제출)
 ※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및 전입일 포함하며 대학생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⑥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 부모 통장 제출금지)
- ⑦ [별지 제2호]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
- ⑧ 직전학기 성적증명서(학교 발급, 19년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또는 수능성적표)
- ⑨ 석차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학교에서 일괄 제출)
- ⑩ 세종시 관내 기관 발급 봉사실적 증명서(있을 경우)
- ⑪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학교 발급)
- ⑫ 등록금 납입 영수증(학교 발급)
- ⑬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ARS 1577-1000 으로 팩스 발급 혹은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발급
- 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⑮ [별지 제4호] 가사상황조사서(별지 제4호 본 서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구분	자격명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대상자	차상위 계층확인서

- ⑯ 소득구간(분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발급)
- ⑰ [별지 제3호] 특기적성 장학생 학교장 추천서(학교 발급)
- ⑱ 수상실적증명서류(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적) ※ 상장 사본 및 경기실적증명서만 인정
- ⑲ [별지 제8호]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추천서(학교 발급)
- ⑳ 공익발전기여자 증명서류(ex. 순직보상급여지급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해당사실 확인서)
- ㉑ [별지 제9호] 지역혁신인재장학생신청서,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 미래계획서, 장학금 사용계획서, 활동포트폴리오,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약서, 기타 증빙서류(ex. 봉사실적 등)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학년/반 * 대학생은 학년만 기재	
학교생활 * 고등학생 : 석차 5% 이내 * 대학생 : 평점(3.5이상/4.5)	석차/전체학생 수 ※ 필히 기재할 것	학과 * 대학생만 해당	
	/		

< 추천자 의견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을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반드시 본 양식과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소지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상 황 조 사 서

신청인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세종시전입일	년	월	일	휴대폰 :					
	학 교 명					학년(학과)				
가 족 사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건강정도	직 업	월수입	비 고		
주거환경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세 : 천원, 월세 : 천원)									
생활주원 수입	ex) 부, 모	월 소득금액	천원 (1인당 월평균 소득금액 : 천원)							
※ 굵은 칸은 학생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무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작성 후 진흥원 제출(신청자는 작성하지 말 것)										
① 재 산 상 황	동산	천원				부 동 산	전	m ²	답	m ²
	자동차	차명					대지	m ²	임야	m ²
		년식				건축물(주택등) :				
						총 과세표준액 : 천원				
관련대장 확인 : 재무담당자 (인)										
② < 신청자 거주 소재 읍·면·동장 의견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③ 추천자(읍면동장) : 읍·면·동장(기관장) (직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주 소	
학 년		학과(반)	

본인은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선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며,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세종시를 이끌어갈 인재로서의 소임
 을 성실히 이행
2. 장학사업 관리규정 제13조의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제14조에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
3.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행사 및 재단의 운영·발전에 적극 참여

2019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공익발전기여 장학금 학교(기관)장 추천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학년/반(학과)	
공익발전기여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국가 유공자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연락처		상이등급	
기관	학교(기관)명		담당자	이름 (인)
				연락처

< 추천자 의견 > ※ 필히 기재할 것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을 재단법인 세종특별
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학교(기관)장 성명 (직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

- 자기소개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 등을 서술하세요(3장 이내 작성)

미래계획서

-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서술하세요(3장 이내 작성)

장학금 사용계획서

지출항목	사용처	산출내역	사용금액	사용목적	비고
합계					

활동포트폴리오

- 본인이 활동한 사항, 수상(최근 3년 이내)등에 대한 사항(5장 이내 작성)

서 약 서

본인은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선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타의 귀감이 되어 세종시를 이끌어갈 인재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이행
2. 장학사업 관리규정 제13조의 장학금 지급중단 혹은 제14조의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
3.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행사 및 진흥원의 운영·발전에 적극 참여

2019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